

인터넷약정 이용안내

인터넷약정 이용안내

가. 인터넷 메인

○ 인터넷 약정 신청화면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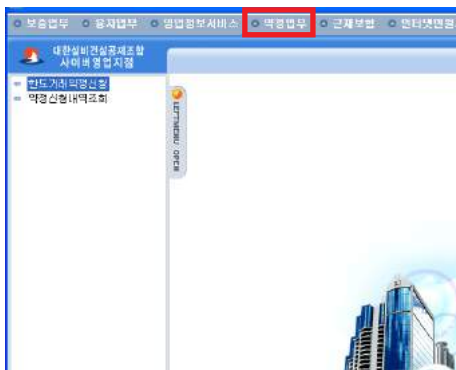
조합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조합 홈페이지의 온라인지점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지점이 실행된 후 해당업무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나. 인터넷 약정 신청

메뉴 중 약정업무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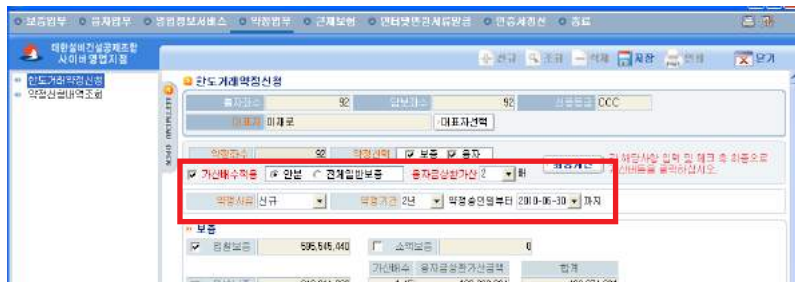


용자의 종류와
거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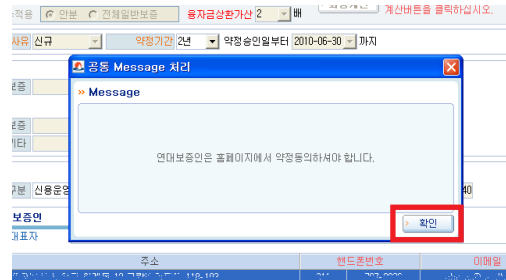
좌측 메뉴 중 한도거래약정신청을 클릭하면 대표자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배수적용 여부, 약정사유 및 약정기간 등을 선택하고 약정연대보증인의 휴대폰번호, 이메일과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연대보증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등으로 약정신청내용이 전송되며, 연대보증인은 홈페이지에서 약정동의를 해야 약정체결이 완료됩니다.



다. 인터넷 약정 승인

지점(영업소)에서는 인터넷약정승인화면에서 신청된 약정내용을 심사 후 신청승인버튼을 클릭하면 약정체결이 완료되며, 신청인의 핸드폰번호, 연대보증인의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로 약정체결완료 내용이 전송됩니다. 

용자의 종류와 거래방법

1. 용자의 개요

조합원에게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 시공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 용자의 종류 및 거래방법

가. 용자종류

종류	내용
운영자금	주요 공사 자재의 비축, 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보수 및 노임지불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신용 운영자금)	출자증권 담보에 의한 용자
(담보 운영자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담보물제공에 의한 용자
시공자금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어음할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3. 용자신청서류

가. 시공자금

- 용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 미확정채권양도승인서(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납세증명서(국세)
- 영수증(계좌입금 시 무통장 입금증)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신규용자에 한함)

나. 운영자금

- 용자금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담보제공증서
- 확정채권양도승인서 (공사대확정채권 시 : 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원본제시, 공사대확정채권 시)
- 납세증명서 (국세)
- 영수증 (계좌입금 시 무통장입금증)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신규용자에 한함)

다. 어음할인

- 어음할인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원본제시)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어음)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어음발행(배서)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대조)
- 영수증 (계좌입금 시 무통장입금증)

융자의 종류와 거래방법

라. 담 보

○ 담보의 종류

자 금 별	담 보 종 류	
시 공 자 금	○ 차주가 도급받은 계약공사의 미확정채권	
운 영 자 금	신 용	○ 출자증권 담보
	담 보	○ 부동산, 상장주식, 정기 예·적금증서 ○ 보증사채, 국·공채, 은행지급보증서 ○ 종합금융회사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어음 ○ 공사대확정채권
어 음 할 인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	

○ 담보운영자금과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담보물은 다른 담보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대체되는 담보물의 유효한도가 당해 채무잔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융자한도

융자종류별 좌당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신용운영자금		한 도
신 용 운 영 자 금	기준좌수 1좌당 융자한도	548,000
	기준초과좌수 1좌당 융자한도	667,000
담보운영자금		1,300,000
어음할인·시공자금		1,100,000

※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시장퇴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하여 신용운영자금 1좌당 융자한도를 축소함. (건설교통부 고시 - 2008.1.8)

5. 융자의 제한

가. 융자의 제한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합니다.

-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을 때
-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한 때
- 어음할인 후 어음발행자가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때
- 조합원 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 연대보증하지 않은 대표자 포함)가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결과 채무불이행정보대상자(N1·N2·N3)로 분류된 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종료된 때, 다만 이미 받

용자의 종류와 거래방법

- 은 용자금은 1회에 한하여 연장 또는 대체 가능
- 각종 보증금 청구, 용자금 연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 국제채납 처분유예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확인된 때,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인 경우 신규 신용운영자금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예정된 경우

나. 기타 용자제한

- (1) 건설업 신규등록을 위하여 조합에 예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용운영자금에 한해 용자를 제한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용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 좌수를 초과한 좌수
 - 어음할인
 - 부동산 및 예·적금 등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운영자금
- (2) 조합원이 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에 예치 후 2년까지 당해분에 대한 용자가 제한됩니다.

6. 용자이자 납부방법 및 이율

가. 납부방법

- (1) 용자이자자는 이자납부 기간별로 기간이율을 적용하여 후취하고, 어음 할인료는 고정이율을 적용하여 선취합니다.

- (2) 용자이자자는 조합에 직접납부, 은행계좌이체 및 자동이체(CMS)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나. 이자의 계산방법

- (1) 용자금이자자는 용자원금에 당해 기간별 이율과 용자일 다음날부터 회수일(이자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2) 어음할인료는 어음할인금액에 당해 요율과 할인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3) 용자당일에 회수되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1일분 이자를 징수합니다.
- (4) 용자이자 납부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휴일까지에 해당하는 납부기간별 용자이율을 적용합니다.
- (5) 할인어음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할인료를 징수하며, 용자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합니다.

다. 용자금이자 자동이체 제도

용자이자를 조합방문 또는 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하는 불편함과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MS(은행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출금가능 예금종류(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CMA

용자의 종류와 거래방법

< 용자이율 및 어음할인요율 >

○ 용자이율

기 간 별	이 율		비 고
	한도 내	한도 외	
31일 이내 (매월 이자 납부시)	연 2.0%	연 4.5%	- 1년은 365일을 기준함 - 이자는 후취함
31일 초과 92일 이내	연 2.5%	연 5.0%	
92일 초과 184일 이내	연 3.5%	연 5.5%	
184일 초과	연 5.0%	연 6.0%	
연체이율	연 13%		

※ 한도의 용자 : 기존 한도내 용자를 초과하는 담보 특별용자 등

○ 어음할인요율

구 분	이 율		비 고
	한도 내	한도 외	
어 음 할 인	연 2.0%	연 4.5%	- 1년은 365일을 기준함 - 어음할인료는 선취함

※ 한도 외 어음할인 : 기존 한도 내 어음할인을 초과하는 특별어음 할인

(2) 출금이체 용자대상

운영자금(신용, 담보)의 용자금이자(연
체이자 포함)

(3) 출금일 : 매월 15일 또는 25일중 택일

(4) 신청기간

출금이체 신청은 해당 납기일 5일전(공
휴일 제외)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시(온라인지점-영업정보서
비스-입금계좌/CMS출금계좌신청)

- 정보 입력 후 거래지점(사무소)에 통
장사본 팩스 송부
- 개인통장(개인사업자)은 개인정보수
집 제한으로 인하여 인터넷 신청이 불

가하므로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거래지점에 서류 제출 시

- CMS 출금이체신청서(조합 거래지점
제출용)

- 용자금이자 출금되는 통장 사본

법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개
인사업체인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통
장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날인하는 인
장은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6)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제도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5일 이내 도래하는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에 의하여 출금되지 않습니다.

용자의 종류와 거래방법

- 첫회에 출금되는 이자는 납부기간에 따라 추가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회 분 이자는 조합에 계좌이체 하시면 추가이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잔고부족 등으로 미 이체될 경우에는 예금잔고가 있는 다음달의 이체일에 납부기간별 추가이율에 의한 이자가 출금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 수표는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통장 또는 계좌번호변경 시에는 조합 관할 지점에 해지한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7. 용자금의 상환기간


- 용자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운영자금 :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나. 어음할인 : 어음만기일은 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시공자금 : 용자대상공사 준공일 이후 2월 이내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기한이익의 상실

용자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기한 전이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여야

- 합니다.
- 가. 약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조합의 채권이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용자금을 당초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 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명 또는 권리행사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마. 조합이 보증한 당해공사에 대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
 - 바. 조합원(차주) · 연대보증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 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 등 법률상의 수속을 받았을 때

9. 채무 불이행 시 조치

- 가. 조합원(차주)이 용자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 14일까지는 신규용자를 제한하고, 그 익일부터는 용자업무거래를 중지합니다.
- 나. 할인한 어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만기일에 부도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조합원(차주)에게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기한이익 상실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업무거래를 중지합니다.
- 다. 연체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의 소정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 업무

가. 도입배경 및 근거

- 우리조합은 경쟁력확보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사가 공사중에 발생시킨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해주는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 도입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1항제5호
 - 조합 정관 제47조 제1항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

나. 정의

공사현장에서 피보험자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장비 등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 운영구조

우리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품안내와 영업배상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손해 사정 및 보상 처리는 협약사인 동부화재에서 수행합니다.

라. 조합원의 혜택

-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보

다 약 10% 상당의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일원화된 조합 서비스(보증, 근재보험, 용자,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공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마. 가입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 가입대상 범위

- 기계설비, 플랜트설치, 토목·건축공사 등 모든 공사
-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
- 청소 용역 등

사. 보상범위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아. 공제계약

(1) 계약의 종류

- 공사장별 계약
-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계약, 구간계약, 개별계약이라고도 합니다.

- 연간포괄 계약
-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포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기간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공사장별 계약	연간포괄 계약
내용	특정 공사 현장에 대한 공제계약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공제계약
공제기간	공사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사의 선택하에 반기별, 분기별 계약도 가능
제출서류	①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청약서 (조합 소정 양식) ② 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①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청약서 (조합 소정 양식) ② 공사(제조) 원가명세서

※ 공제기간은 청약일 이후에 개시됨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제기간 개시일을 소급하여 청약하는 때에는 무사고 확인원을 징구하고 공제기간의 개시일을 소급할 수 있음. 공제기간 경과 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2) 공제가입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
- 대인배상 : 1인당 및 1사고당 1천만원부터 30억원까지
- 대물배상 : 1사고당 2백만원부터 10억원까지
- 대인대물 일괄배상 : 1사고당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 ※ 공제기간 중에는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함.

-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 조합원이 피해자(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조합원이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 자. 공제료 구조

$$\text{공제료} = \text{도급금액} \times \text{기본요율} \times (\text{보상한도인상계수} - \text{자기부담금 할인계수})$$

(1) 도급금액

영업배상책임공제에 있어 공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의 연간 총도급금액(VAT제외) 또는 공사건별 도급금액(VAT포함) 등을 말합니다.

영업배상책임
공제 업무

(2) 기본요율

영업배상책임공제증권 발급 시 사업의 종류별로 판매하는 기본적인 요율로 우리조합은 협약사인 동부화재와 업무협정에 의해 시중보험사 보험요율의 약 90%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 보상한도인상계수

1회의 사고발생으로 지급될 수 있는 1인당·1사고당 설정된 공제료의 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계수로 보상한도액에 따라 대인배상은 1에서부터 8.41까지, 대물배상은 1에서부터 5.12까지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 대인배상

(단위 : 백만원)

1인당 1사고당	10	20	30	50	75	100	150	200	300	4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10	1.00															
20	1.22	1.26														
30	1.35	1.39	1.45													
50	1.49	1.54	1.60	1.66												
75	1.57	1.61	1.68	1.74	1.80											
100	1.60	1.65	1.71	1.78	1.84	1.89										
150	1.70	1.75	1.82	1.89	1.96	2.01	2.04									
200	1.80	1.85	1.92	2.00	2.07	2.13	2.16	2.19								
300	1.98	2.03	2.12	2.21	2.29	2.37	2.39	2.44	2.50							
500	2.22	2.27	2.37	2.47	2.56	2.65	2.67	2.72	2.80	2.85	2.88					
750	2.43	2.54	2.61	2.72	2.80	2.90	2.92	2.97	3.04	3.09	3.14	3.60				
1,000	2.66	2.79	2.87	3.00	3.07	3.18	3.22	3.27	3.34	3.40	3.44	4.06	4.68			
1,500	3.05	3.20	3.29	3.44	3.52	3.65	3.69	3.75	3.83	3.90	3.94	4.66	5.37	5.63		
2,000	3.44	3.61	3.71	3.88	3.97	4.11	4.16	4.23	4.32	4.40	4.45	5.25	6.05	6.36	6.67	
3,000	4.15	4.33	4.45	4.66	4.76	4.94	5.00	5.08	5.18	5.28	5.34	6.30	7.26	7.63	8.01	8.41

- 대물배상

(단위 : 백만원)

1사고당	인상계수	1사고당	인상계수
2	1.00	100	2.77
5	1.28	200	3.14



1사고당	인상계수	1사고당	인상계수
10	1.50	300	3.49
20	1.81	500	3.99
30	2.02	750	4.59
50	2.38	1,000	5.12

○ 개별할인할증

제휴보험사와의 별도 인수협약에 의거 적용공제(보험)요율의 10%를 할인합니다.

○ 공제로 분할납입 특약요율

납입회수	할증계수	납입방법
2회납	1.02	할증계수를 적용한 공제료를 납입 회수 및 비율에 따라 분할납입
4회납	1.03	

차. 사업의 종류 예시표

위험의 구분		
댐, 방파제, 관개공사	신설공사 또는 개·보수 및 복구공사	
지하공사 및 굴착공사	지하철, 지하도, 지하 주차장의 신설공사 또는 개·보수 및 복구공사, 기타 굴착공사	
도로건설, 도로 등의 포장, 궤도 건설공사	궤도의 신설공사 또는 개·보수 및 복구공사	
철도 건설공사	신설공사 또는 개·보수 및 복구공사	
빌딩 건설 공사	도급금액 10억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개·보수 및 복구공사(중·개축공사, 일반 가정집, 스포츠 시설, 관련공사 포함)
	도급금액 100억원 이하	
	도급금액 100억원 초과	
교량 건설공사	신설공사 또는 개·보수 및 복구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전기, 전화, 급수, 소화, 온·냉방환기, 공작물의 도장 및 기타 건축물의 설비 및 개·보수공사	
이동 해체공사	공작물의 이동, 해체, 철거, 파괴공사	
	비계, 기중기의 설치·이동·해체공사	
플랜트, 기계장치 등의 조립 또는 부착공사	각종 기계장치의 조립, 부착공사 또는 삭도(cable way) 신설공사	
철탐, 고가선 등의 고층 구축물 건설공사	철탐, 광고탑, 송전선등의 신설공사	
승강기 등의 공사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 보도의 설치·보수·점검 등의 공사	
가스 설비공사	가스판매업의 부대공사 포함	
광고판 설치공사	광고탑을 제외함	
상·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영업배상책임
공제 업무

위험의 구분	
파이프라인 공사	지상공사
	지하공사
원에 및 조경작업	원예작업
	조경작업
배달업	소화물 배달업 및 기타 서비스업
목공	
탱크건설	
활주로공사	
비행기수리	
잠수부	
준설작업	
심부름센터	
청소작업	시설물 내외의 청소작업
살충작업	소독 및 해충구제 작업
기타	

2. 인터넷 영업배상책임공제 신청

가. 신청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application form for Business Liability Insurance. The interface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with options like '금지 상품 안내', '근거보장', and '영업배상'.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2. 일반사항** (General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계약형태' (Contract Type), '공사명' (Project Name), '사업/공사업' (Business/Construction), '공제기간' (Coverage Period), and '질서대부' (Order Department).
- 3. 보살핌도** (Coverage): A table with columns for '대인' (Third Party), '사과당' (Accident), '자기부담금' (Self-insured Retention), and '역간부상충회' (Reciprocal Insurance). Each column has a dropdown menu for selection.
- 4. 특약사항** (Special Terms): Includes checkboxes for '발주자미필적특별약관' (Optional Special Terms for Client), '교차계약특별약관' (Optional Special Terms for Cross-Contract), and '대외견포기특별약관' (Optional Special Terms for Waiver of External Claims).
- 5. 추가 기재사항** (Additional Information): A text area for providing extra details.
- 6. 공제료 사항** (Premium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총 공제료(배서포함)' (Total Premium including administrative fee), '납입 공제료(배서포함)' (Paid Premium including administrative fee), and '배서 공제료' (Administrative fee).

At the bottom, there are fields for '신청자' (Applicant), '전화번호' (Phone Number), and '핸드폰번호' (Mobile Number), along with a '제출' (Submit) button and a disclaimer: '× 핸드폰번호입력시 영업배상 신청결과가 핸드폰으로 전송됩니다.' (When entering the mobile number, the application result will be transmitted to the mobile phone.)

- ① 상단 메뉴의 근재/영업배상업무 → 좌측 영업배상 → 영업배상설계 → 계약설계를 클릭
- ② 우측 상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활성화 됨
- ③ 피공제자 정보 옆의 “계약자와 동일” 버튼 클릭하고,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 버튼 클릭
- ④ 담보사항을 입력
 - 계약형태에서 공사장별계약, 연간포괄계약 중 선택 후 내용 입력
- ⑤ 보상한도 내용 입력
- ⑥ 입력사항에 대한 내용 확인 후, “공제료산출”버튼 클릭
 - 공제료사항에 납부해야 할 공제료가 산출됨
- ⑦ 맨 하단 신청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우측 “신청”버튼 클릭
- ⑧ 필요 시 하단의 영업배상 약관을 출력

나. 인터넷 공제신청 승인 후 증권 출력

- ① 상단 메뉴의 근재/영업배상업무 → 좌측 공제증권출력 클릭
- ② 보험종목, 계약형태, 해당일자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③ 해당 건의 우측 공제증권출력 클릭
 - ※ 좌측 하단의 영수증출력에서 해당일자 조회 후 영수증 출력 



생활 속의 법률 **아들**

아들이 태어났을 때 평소 잘 아는 보험모집인이 유아를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 거절하기도 여의치 않아 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달 들어가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분 말씀인즉 “아들이면 딸보다 매달 들어가야 할 돈이 조금 많아요.”하신다. 보험료가 여아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사내아이는 여아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기에 그렇다고 한다.

나도 사내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사건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건의 행위자는 대부분이 남자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한다. “청소년기 사내자식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깝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편해!”

최근 들어 학교와 관련된 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학교에서 단체로 놀러갔는데 그곳에서 같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급생 아이와 싸웠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상대방 아이에게 상처를 심하게 가하였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처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미스러운 행동(그 외에도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사건, 사고에 관계되는 경우)을 처리하는 절차로는 ① 형사적인 절차, ② 행정적인 절차, ③ 민사적인 절차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사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보통 소년법상의 소년¹⁾이라 함은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며(소년법 제2조), 그 절차는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으로 분류된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형법 제9조). 그렇다고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10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물론 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에도 그 범행의 동기, 형태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

한편 소년인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다. 다만 절차 및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특례가 인정될 뿐이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는 일단 말 그대로 보호사건은 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며, 형사사건은 소년을 범죄자로 본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사건은 그 절차 및 처분결과에 있어 형사사건보다 매우 유리하다.

행정적인 방법이란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방법이다. 주로 학교내외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한 것으로 자치위원회의 결정(가해

1) 여기서 '소년'이라 함은 남녀 모두를 의미한다.

기고

자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결정)에 의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 및 행정심판(소송)이라는 불복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위의 규정을 간략하게 풀이하자면, 아이가 아주 어리면 부모와 학교 등이 책임을 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아이라면 아이, 부모 및 학교(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아이가 지도교사의 인솔 하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 머물렀던 숙소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가해자인 동급생들은 당시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들의 부모는 변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가해자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여행지 숙소에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동급생들 상호간 폭행 또는 상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학급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재판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중과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조정 또는 화해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형사 재판정을 가면, 판사도 여자, 검사도 여자, 변호사도 여자, 그런데 피고인만 남자인 경우를 자주 보고는 한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참 공부할 나이인 청소년기에 남자 아이들은 산만(좋은 말로 하면 활동적)한데 반하여, 여자 아이들은 차분하여 현재 시험체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워서 책을 보다 다시 레고를 하고, 레고에 집중하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 노는 아들을 본다. 지극히 정상인데도 갑갑한 마음만 드는 것은 왜일까? 🐼



법무법인 '온' 변호사 이 호 진
전화번호 : 02-6203-0703, 이메일 : ephitor@naver.com
• 사법연수원36기
• 서울중앙 국선전담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 변호사(전)
• 現)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위원